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번 호	15581
-------------	-------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,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.

이러한 가운데,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.0%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음.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, 대출 연체율 및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,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특히, OECD 38개국 중 미국, 일본, 독일, 호주,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업종·지역·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

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.

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·규모별, 기업의 규모별,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,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업의 종류별”을 “사업의 업종별·규모별, 기업의 규모별, 지역별 또는 산업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의 업종별·규모별, 기업의 규모별,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.

이 경우 각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의 격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)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<u>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사업의 종류별</u>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<u>이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의 업종별·규모별, 기업의 규모별,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<u>사업의 업종별·규모별, 기업의 규모별, 지역별 또는 산업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이 경우 각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의 격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